
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,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재정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연안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최 기 도)